

강사인사규정 시행세칙

□ 제정 : 2019. 7. 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강사인사규정」 제5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획) 교학처장은 각 학과장과 협의하여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제3조(채용전형) ①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며,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경우
3. 학기 개시일 이전 30일 이내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긴급히 채용이 필요할 경우

제 2 장 공개채용

제4조(채용공고) 강사의 신규채용 공고는 임용분야, 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수원과학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5일 이상 공고 한다.

제5조(제출서류) 지원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임용지원서
2. 강의경력증명서
3. 해당학위 및 성적증명서
4. 경력 및 재직증명서
5. 자격증, 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 증빙서류(해당자인 경우)
6. 강의계획서
7. 그 외에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제6조(심사기구) 신규채용 시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3인 이하)하여 심사하며, 위원은 채용학과의 전임교원이 위원장은 채용학과의 학과장이 된다.

제7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심사위원과 지원자가 친족(배우자, 혈족 8촌, 인척 4촌)인 경우 제척·회피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은 총장이 결정한다.

제8조(심사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강사 자격기준 심사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학력, 교육경력, 산업체 경력, 강의계획의 적절성, 자격증 등 심사
3. 면접심사 : 지원자의 품성과 태도 및 교육 역량 심사

제9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지 서식 1호의 평가표에 따른다.

제10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 강사 신규 임용 서류심사(기초·전공) 평가표(별지 서식 1호)에 따라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를 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3배수 내외를 선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 3 장 특별채용

제11조(특별채용절차) ① 제3조 2항의 특별채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과는 강사 특별채용 추천서를 소속 전임교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교학처장에게 추천한다.

② 교학처장은 자격을 심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 4 장 기 타

제12조(심사결과 공개) 신규채용 지원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비밀유지) 강사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는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칙)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

강사 신규 임용 서류심사(기초·전공) 평가표

학과	성명	출생월일	종합 심사결과
		(생년은 생략)	적합□, 부적합□

심사 항목		배점	세부 심사 항목	심사점수
기초 심사	자격기준	X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 일치여부	<input type="checkbox"/> 적 합
			- 지원자의 경력과 채용분야 일치여부	<input type="checkbox"/> 부 적 합
전공 심사	① 학력	20	- 석사졸업 이상 (20점) - 학사졸업 (18점) - 전문학사 졸업(16점)	
	② 교육경력	20	- 교육경력 3년 이상 (20점) - 교육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18점) - 교육경력 1년 미만인 경우 (16점)	
	③ 산업체경력	30	- 산업체경력 3년 이상 (30점) - 산업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27점) - 산업체경력 1년 미만인 경우 (24점)	
	④ 강의계획의 적절성	30	-교과목운영목표, 수업진행방법, 과제물 운영 및 평가방법 등이 매우 적절(30점) -교과목운영목표, 수업진행방법, 과제물 운영 및 평가방법 등이 적절(27점) -교과목운영목표, 수업진행방법, 과제물 운영 및 평가방법 등이 보통(24점) -교과목운영목표, 수업진행방법, 과제물 운영 및 평가방법 등이 나쁨(21점)	
	⑤ 자격증	10	-초빙분야 관련 전공자격증(1개당 5점으로 최대 10점)	추가점수
합계		100	-100점 만점 기준으로 ① ~ ④의 점수가 100점일 경우 ⑤의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신규임용 평가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신규임용 자격을 허가함.

기타 평가 의견(의견이 있을 경우만 작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위원장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